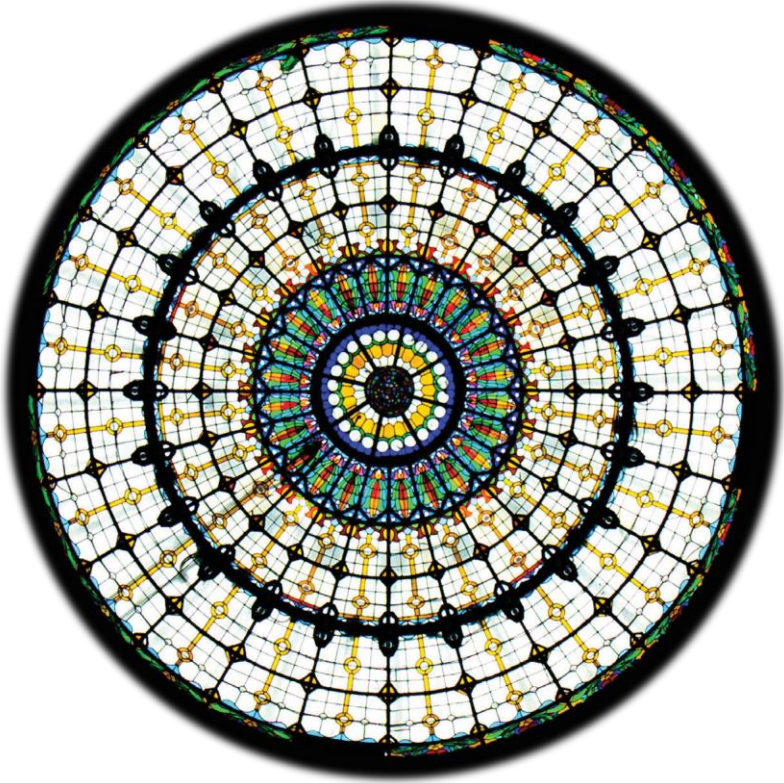


Deloitte.



세무뉴스

2020년2월

For reference only, not to be distributed, or sold

신규 규정

영업세 (license fees)에 대한 제 22/2020/NĐ-CP호 시행령	4
2020 년 관세 할당량 (tariff quota) 및 CPTPP하의 관세 할당량에 대한 신규 규정	4

새로운 결정문

법인 소득세 ("CIT")

➤ 이사회 구성원으로 부터의 대여금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간주됨	6
➤ 부동산 재평가로 인한 차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6

개인 소득세 ("PIT")

➤ 2019년 PIT 확정신고 안내	7
➤ 형제 자매, 조카, 삼촌, 조부모 부양가족 등록	8
➤ 근로계약서 종료 후 지급한 소득에 대한 10 % 원천징수	8

전자세금계산서 ("E-invoice")

➤ 세금계산서 조정 확인 문서는 구매자가 전자서명이 불가능 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8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에 관한 일반 규정	9

부가가치세 ("VAT")

➤ 수출가공기업 (EPE -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은 투자사업에 대한 VAT환급을 받을 수 없음	10
➤ 선전기에 대한 VAT	10
➤ EPE에 제공되는 회계, 세무서비스에 0 % 세율 적용	10
➤ 수력발전 활동에 대한 VAT 신고	11

외국인계약자세 ("FCWT")

- 로열티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공제 & 비용 인정됨 11
- 서비스 제공하는 외국개인 사업자에 대한 FCWT 신고 12

세관, 수입 및 수출 관세

- 세관감독대상인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 강화 12
- 수출입 절차를 처음 진행시 HS코드를 잘못신고해도 행정 위반 제재가 부과되지 않음 13
- 상표 사용료가 관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14
- 원자재와 물자를 수입한 후 수출상품을 가공(processing)을 위해 아웃소싱하는 기업의 경우 수입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15
- 수출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조세정책 16
- 수입품에 대한 보험료 신고 근거 16
- CPTPP에 따라 운송 중 상품이 손상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문서에 대한 규정 17
- 세관 서비스 대행사의 지점은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음 18

신규 규정

영업세 (license fees)에 대한 제 22/2020/NĐ-CP호 시행령

2020년 2월 24일, 정부는 영업세에 대해 규정하는 제 139/2016 / ND-CP 호 시행령의 일부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제 22/2020 / ND-CP 호 시행령을 발령했다.

구체적으로, 본 시행령은 기업의 경우 설립 후 첫해 및 개인, 가족 사업자의 경우 생산 영업하는 첫해에 영업세 면제 정책을 추가한다. 영업세가 면제되는 "첫해"는 회계 연도가 아닌 역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판단된다.

특히 개인, 가족 사업자에서 전환된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영업세가 면제된다.

특히 개인, 가족 사업자에서 전환된 중소기업의 경우 최초 사업자 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영업세가 면제된다.

지점, 대표 사무소 (Representative Office), 영업소의 설립 후 첫해 또는 설립 후 3년(중소기업의 경우) 이 지점, 대표 사무소, 영업소는 모기업과 같은 기간으로 영업세가 면제된다.

또한 공립 유치원, 공립학교도 영업세 면제대상에 추가된다.

본 시행령은 2020년 2월 25일부터 유효하다.

2020년 관세 할당량 (tariff quota) 및 CPTPP하의 관세 할당량에 대한 신규 규정

• 담배 원자재 수입

산업 통상부는 2020년 1월 14일 제01/2020/TT-BCT호 시행규칙 및 2020년 1월 22일 제 03/2020/TT-BCT 호 시행규칙을 발령하여 2020년 관세 할당 및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에 따라 담배 원자재 수입에 대한 관세할당을 규정하였음.

따라서:

- 2020 년 관세할당에 따라 담배 원자재 (HS 코드 2401)의 수입량은 59,098 톤이다.
- CPTPP 협정에 따라 약정된 담배 원자재 (HS 코드 2401)의 수입 관세할당량은 2020년에 525톤이며 매년 25톤씩 증가하고 2038년에는 975톤을 달성하기로 한다.

• 소금 및 가금류 알 수입

2020 년 1 월 22 일 , 산업통상부는 2020 년 수입 관세할당량에 따라 소금 및 가금류 알 수입 관리 원칙을 규정하는 제 02/2020 / TT-BCT 호 시행령을 발행했다.

따라서 가금류 알과 소금의 2020 년 수입 관세할당량은 각각 57,940 톤과 110,000 톤이다.

• 중고차량 수입

2020 년 1 월 22 일 , 산업통상부는 CPTPP 협정에 따른 중고차량 수입 관세할당을 규정하는 제 04/2020/TT-BCT호 시행규칙을 발행했다.

따라서 CPTPP 협정에 따른 중고차량의 연간 수입 관세할당량은 2020년에 66 대로 시작하여 매년 06 대씩 증가하여 2034년에 150 대로 설정한다.

중고차량 수입 관세할당량은 경매법 규정에 따라 경매 기준으로 배분된다. 관세할당에 따라 중고차량 수입 절차 진행 시 현행규정에 따라 수입 절차를 진행하고 경매에 당첨된 사업자는 산업통상부의 문서를 관세당국에 제시하여 중고차량 수입 관세할당 사용권이 있음을 설명한다.

또한, 관세할당량에 따라 수입되는 중고차량은 CPTPP에 따른 물품의 원산지 규정과 차량에 적용되는 기술표준, 품질, 기술안전 및 환경보호기준에 관한 현행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운 결정문 (Ruling)

법인 소득세 ("CIT")

이사회 구성원으로 부터의 대여금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간주됨

2020년02월20일, 하노이 세무국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제 6684/CT-TTHT 호 OL를 발행했다. 회사가 회사 이사회의 구성원이고 회사의 운영에 참여하는 개인으로 부터 차입할 경우 (무이자 대출 포함) 제20/2017/ND-CP호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이 경우 회사는 제 20/2017/ND-C 호 시행령 제8조 3항 규정에 따라 CIT 과세 소득 확정신고시 대출금의 이자비용에 대해 비용으로 인정되는 이자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재평가로 인한 차이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2020년 01월 15일, 하노이 세무국은 부동산 재평가로 인해 발생한 차이의 손금인정 여부에 대한 제1971/CT-TTHT호 OL를 발행했다.

따라서 회사는 재판매를 위해 부동산 (토지, 부동산 사용권 및 소유권)을 구매하고 연말에 해당 부동산의 재평가된 가치가 구매원가에 비해 절하될 경우, 이 평가절하 금액은 제 48/2019/TT-BTC호 시행 규칙 제1조 1항에 규정된 총당금 적립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는 평가절하 금액에 대해 총당금을 적립하지 못하며 CIT상 비용으로 처리하지도 못한다.



개인 소득세 ("PIT")

2019년 PIT 확정신고 안내

2020년 2월 18일, 하노이 국세청은 2019년 PIT 확정신고 및 부양가족 세금 코드 ("NPT") 발급에 관한 제6043/CT-TTHT호 OL를 발행했다.

따라서 2019년의 PIT 확정신고와 관련 몇가지의 주목할 만한 사항이 아래와 같다:

- 세금 확정 신고 서류 제출 만료일 : 2020년 3월 30일.
- 외국인의 경우 PIT과세 시작 시점.
- 베트남 거주자인 외국인의 경우 PIT 과세 시점은 근로계약서 (labor contract) 또는 인사발령서 (assignment letter)에 따라 베트남에서 근무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베트남에 입국한 첫날을 기준으로 과세 시작된다.
- 월 평균 수입이 1,000,000VND 미만인 부양가족에 대한 부양가족 등록.

소득이 없거나 해당연도에 모든출처의 월 평균 소득이 1,000,000VND 미만인 부양가족을 등록할 경우 납세자는 부양가족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우편을 통한 개인 소득세 확정신고가 권고 됨.

하노이 세무국은 납세자들이 확정 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우편을 통한 확정 신고서 제출을 권고하여하였다. 이 경우 확정신고와 관련한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납세자는 연락처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형제 자매, 조카, 삼촌, 조부모 부양가족 등록

2020년 02월 20일, 하노이 세무국은 부양가족 등록에 대한 제 6686/CT-TTHT 호 OL을 발행했다. 따라서 납세자가 직접 부양하고 의지할 곳 없는 형제 자매, 조카, 삼촌, 조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경우 제 111/2013/TT-BTC 호 시행규칙 제 9조 1항 규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납세자의 형제 자매, 조카, 삼촌, 조부모가 의지할 곳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PIT 상 공제될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근로계약서 종료 후 지급한 소득에 대한 10 % 원천징수

2020년 01월 21일, 하노이 세무국은 PIT에 대한 제 3342/CT-TTHT 호 OL을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법, 사회 보험법 및 근로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이 종료한 후 회사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소득이 VND 2,000,000 이상인 경우, 회사는 지급한 총소득금액의 10 % PIT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 ("E-invoice")

**세금계산서 조정 확인 문서는
구매자가 전자서명이 불가능
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해야 함**

2020년 02월 24일, 하노이 세무국은 세금계산서 취소 규정에 대한 제 7639 / CT-TTHT 호 OL을 발행했다. 따라서, 발행되고 구매자에게 발송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제 32/2011/TT-BTC 호 시행규칙 제 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구매자와 판매자는 오류를 정확히 표시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양쪽이 전자서명을 한다). 구매자가 전자서명기능이 없을 경우 양쪽이 서면으로 오류를 명확히 기술하고 서명한다.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에 관한 일반 규정

2020년 02월 19일, 하노이 세무국은 전자세금계산서 사용 안내에 관한 제 6276/CT-TTHT호 OL를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2018년 11월 1일부터 유효한 제 119/2018/ND-C호 시행령 및 2019년 11월 14일부터 유효한 제 68/2019/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2018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조세당국이 제 119/2018/ND호 시행령 및 제 68/2019 / 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 전환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경우는 행에서 제 51/2010/ND-CP호 시행령, 제 04/2014/ND-CP호 시행령 및 관련 지침문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한다.

제 51/2010/ND-CP호 시행령, 제 39/2014/TT-BTC호 시행규칙 및 제 32/2011/ TT-BTC 호 시행규칙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할 경우 상품판매 및 서비스제공 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시점이 제 39/2014/TT-BTC호 시행규칙 제 16조 2항 규정에 따른다.

기업이 200,000VND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구매자가 이름, 주소 및 세금 코드 (있으면)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 2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3조 7항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여전히 발행해야 하고 세금계산서에서 “구매자가 이름, 주소, 세금코드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규정

2020년 1월 21일, 세무총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안내에 대한 제 326 / TCT-CS호 OL를 발행했다.

기업은 제 32/2011 / TT-BTC호 시행규칙에 따라 상품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 발행, 사용할 경우 제 32/2011/TT-BTC호 시행규칙의 자세한 안내규정외에 제 51/2010/ND-CP호 시행령 및 제 39/2014/TT-BTC호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기업은 고객에게 할인을 적용할 경우 재무부의 2014년 03월 31일 제 39/2014/TT호 시행규칙과 첨부 발행된 4부록, 2.5항 안내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부가가치세 ("VAT")

수출 가공 기업 (EPE - Export Processing Enterprises) 은 투자사업에 대한 VAT환급을 받을 수 없음

2020 년 2 월 21 일, 세무총국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을 안내하는 제 774/TCT-KK 호 OL를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투자사업에 대한 VAT 환급을 규정하는 제 130/2016 / TT-BTC호 시행 규칙 제 1 조 3 항은 공 제 방 법 으 로 VAT 를 신고, 납 부 하 는 기 업 에 만 적용되며 EPE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EPE는 위의 제130/2016/TT-BTC호 시행규칙 제1조 3항에 규정된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VAT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전기에 대한 VAT

하노이 세무서는 2020년 2월 20일 신문에 게재하기 위한 선전용 뉴스기사 작성시 VAT계산서 발행에 대해 안내하는 제6683/CT-TTHT호 OL를 발행했다.

구 체 적 으 로 신 문 사 편집부서가 특정 전문 주제 (즉, 밀수퇴치, 무역사기 및 위조품 방지 등)에 관한 기사 작성 계약을 맺을 경우 제 219/2013/TT-BTC 호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VAT 과세대상이 아니다.

EPE에 제공되는 회계, 세무서비스에 0 % 세율 적용

2020 년 02 월 20 일, 하 노 이 세무국은 EPE기업에 제공되는 회계, 세 무 서 비 스 에 대 한 VAT세율에 관한 제 6806/CT-TTHT호 OL를 발행했다. 따라서 법 규정에 따라 수출생산 및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EPE기업에 제공되는 회계, 세 무 서 비 스 의 경 우 비 관 세 구 역 에서 공 급 및 소 비 되 며 제 130/2016/TT-BTC호 시행규칙 제 9조 b항 규정을 충족하고 동시에 이 시행규칙의 제1조 2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0% VAT세율이 적용된다.

수력발전 활동에 대한 VAT 신고

2020 년 2 월 13 일, 세무총국은 수력발전 활동에 대한 VAT 신고를 안내하는 제 570 / TCT-KK 호 OL 를 발 행 했 다 . 구체적으로 :

- 회사가 지점으로 하여금 수력발전 공장을 관리, 운영하고 및 발전소의 전기를 직접 판매하여 매출을 창출하도록 할 경우 지점이 그 활동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VAT를 신고, 납부한다.
- 회사가 지점으로 하여금 수력발전 공장을 관리, 운영하도록 지정 하지만 직접 판매하지 않아서 전기 판매로 인한 매출을 창출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장의 수력발전활동에 대해 VAT를 신고, 납부한다.



외국인계약자세 ("FCWT")

로열티에 대한 외국인계약자세가 공제 & 비용 인정됨

2020 년 02 월 24 일 , 호 치 민 세무국은 상표권 사용계약의 로열티에 관한 제 7634/CT-TTHT호 OL을 발행했다.

따라서 기업이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 재무부의 2016 년 11 월 7 일 제 15888/BTC-CST 호 OL 의 안내에 따라 FCWT를 징수하고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신고, 납부한다.

로열티와 관련된 세금 공제 및 비용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

- 상표권 사용료의 경우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 4 조 의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 대신 납부한 CIT세금의 경우 로열티 수수료가 Net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되고 지급된 경우 제96/2015/TT-BTC호 시행규칙 제 4 조 2.37 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
- 대신 납부한 VAT세금의 경우 제 219/2013/TT-BTC 호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에 따라 공제 될 수 있다.

서비스 제공하는 외국개인 사업자에 대한 FCWT 신고

2020 년 01 월 21 일 , 하 노 이 국세청은 서비스 제공하는 외국 개인사업자에 대한 FCWT 신고를 안내하는 제3353/CT-TTHT호 OL를 발행했다.

따 라 서 회 사 는 외 국 개인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인 사업자가 외국법에 따라 사업을 등록했거나 외국에서 인정된 개인사업자 자격 확인서를 (베트남에서 사용될 외국서류가 법규정에 따라 합법화 공증되어야 함) 보유하면 개인 사업자로 간주되며 개인의 자문 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인한 소득은 영업소득으로써 FCWT가 과세된다.

서비스를 구매한 베트남회사가 재무부의 2015년06월15일 제 92/2015/TT-BTC 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제 01 /CNKD호 양식으로 외국인 계약자를 대신하여 VAT, PIT 를 징수 및 신고, 납부할 책임이 있다.

세관, 수입 및 수출 관세

세관감독대상인 물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 강화

2020 년 2 월 11 일, 세관총국은 세관감독대상인 물품에 대한 검사, 통제 및 감독 강화에 관한 제 754/TCHQ-GSQL 호 OL를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관세당국은 선전, 국경 감시 강화, 특별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리지역에서 감독대상인 물품에 대한 조사 및 통제절차를 강화하기로 한다.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운송 수단의 징표(볼트 위치, 조인트, 컨테이너 도어 경첩, 쇠의 위치 등)은 다음과 같은 세관 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컨테이너 :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아야 하고 잠금장치와 결쇠는 쇠이 붙어 있어야 하고 ; 컨테이너 경첩은 2015 년 11 월 5 일 제 64/2015 / TT-BTC 호 시행 규칙에 규정된 표준을 준수한다
- 트럭 : 화물 컨테이너에 구멍이나 찢어진 현상이 없어야 함, 잠금 장치 및 결쇠에는 쇠이 붙어 있어야 함.

상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송 수단에 물품을 적재할 수 없으며 세관감독 구역을 통과할 수 없다.



수출입 절차를 처음 진행시 HS코드를 잘못신고해도 행정 위반 제재가 부과되지 않음

2020 년 2 월 20 일, 관세총국은 물품을 처음 수입, 수출 통관할 때 HS 코드를 잘못 신고할 경우 행정 제재 면제에 관한 제 974/TCHQ-PC 호 OL 를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2013년 10 월 15 일 제 127/2013/ND-CP 호 시행령 제 5 조 6 항 및 2016 년 10 월 20 일 제 155/2016/TT-BTC 호 시행 규칙 제 4 조 5 항에 따르면 기업은 “처음으로 물품 수출입 절차를 진행할 때 세관 신고서에서 제품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데 베트남 수출, 입 제품 항목 (List of Vietnam's exports and imports) 에 따라 HS 코드를 잘못 적용하여 수출, 수입 관세율을 잘 못 신고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 제재는 면제된다. 이 면제사항은 계약, 주문 별 첫 번 째 수출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전에 물품 수출입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는 기업은 HS 코드를 잘 못 신고할 경우 행정제재가 면제된다. 과거에 상품 수출입 절차를 진행한 적이 있는 기업은 계약 별로 처음 수출입이라 해도 HS코드를 잘 못 신고하면 행정 제재가 부과된다.

상 표 사 용 료 가 관 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함.

2020년 02월 18일, 관세총국은 장비, 기계 임대 수수료 및 로열티에 대한 제 938/TCHQ-TXNK호 OL를 발행했다.

따라서 제 39/2015 /TT-BTC호 시행규칙 제1조 8항을 수정 보완하는 제 60/2019 / TT-BTC호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표 사용권 관련 로열티가 다음 3가지의 조건을 충족하면 관세의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실제 지불 되거나 지불된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표 사용권이 수입 품목과 관련 됨;
- 상표 사용권에 대한 지불이 수입 물품의 매매거래의 한 조건 임.

원자재와 물자를 수입한 후 수출상품을 가공(processing)을 위해 아웃소싱하는 기업의 경우 수입세 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2020년 1월 16일, 관세총국은 수출품 생산을 위해 원자재, 물자 수입에 관한 제 395 / TCHQ-TXNK호 OL를 발행했다.

따라서 제 107/2016/QH1호 수출입세법 및 제 134/2016/ND-CP호 시행령은 기업이 수출품을 생산을 위한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일부의 생산공정을 다른 기업에 가공을 위해 아웃소싱하는 경우에 면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업체가 수출품을 생산을 위해 원자재, 물자를 수입하여 일부의 가공/생산공정을 다른 업체에 아웃소싱하면 수입세 면제를 적용하지 못한다.

수출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조세정책

2020년 2월 14일, 관세총국은 수출생산을 위한 수입품에 대한 조세정책을 규정하는 제 858/TCHQ-TXNK 호 OL를 발행했다.

따라서 기업이 수출생산을 위해 화물을 수입하지만 직접 생산하는 대신에 일부 또는 전부의 수입된 자재를 다른 업체에 맡기고 일부 또는 전체의 가공공정을 외부 기업에 맡긴 후 다시 받아서 수출하는 경우에 제 134 / 2016 / ND-CP호 시행령 제12조 2항에 따른 수출생산을 위한 수입에 대해 수입관세 면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공장, 기계, 장비를 임대하고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해 수입된 원자재 및 물자에 적합한 생산시설에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사용권을 가지며 세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생산시설

통지를 실시하는 경우 제 134/2016/ND-CP호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임가공을 맡긴 기업은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기업은 원자재 및 물자를 수입하여 외국 사업가와 가공(Processing) 계약서에 따라 가공을 수행하고 베트남에서 다른 개인, 단체에 가공을 맡기는 경우에 제 134/2016/ND-CP호 시행령 제10조 2항에 관세면제 조건을 충족하면 원자재 등 수입에 대한 관세가 면제된다.



수입품에 대한 보험료 신고 근거

2020 년 1 월 21 일 ,
관세총국은 수입품에 대한
보 험 료 신 고 에 관 한
제 487/TCHQ-TXNK 호 OL를
발행했다.

따 라 서 , 제 39/2015/TT-
BTC호 시행규칙 제 13 조 2
항에 따라 이 조 1항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최초
수입국경에 도착하는 물품에
대한 보험료가 수입품의 관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 입 품 이 원
보 험 계 약 서 (보 험 료 가
보 험 계 약 상 상품총액의
%비율로 계산될 것으로
규정됨)로 보험이 되어 있고
기업이 관세신고시 보험료
인보이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보험금액이 객관적이고
수량화 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발행할 때
보험금 청구서에 부합하면
회 사 가 보 험 계 약 을
세관신고서에 보험금 신고의
근거로 제출할 수 있다.

CPTPP에 따라 운송 중 상품이 손상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문서에 대한 규정

2020년 02월 11일, 관세총국은
CPTPP 협정에 따라 운송
증빙서류에 관한 제 758/TCHQ-
GSQL호 OL를 발행했다.

따라서, CPTPP협정의 회원국이
아닌 하나 또는 수많은 국가의
영토를 거쳐 운송되며 그 비회원
국가에서 창고에 저장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운송과정에서
손상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운송 증빙서류가
제공되어야 한다.

CPTPP협정의 회원국이 아닌
하나 또는 수많은 국가의 영토를
거쳐 운송되며 그 비회원
국가에서 창고에 저장되면
상품이 운송과정에서 손상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창고
또는 관세 증빙서류가 제공되어
야 한다.



세관 서비스 대행사의 지점은 우선권이 적용되지 않음

2020년 02월 12일, 관세총국은 우선적용제도(Priority regime)의 조건에 대해 안내하는 제 787/TCHQ-GSQ 호 OL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업법 제45조에 “지점은 법인에 종속되는 영업소이며 위임받은 대표의 역할을 포함 법인의 일부 혹은 전부의 기능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지점의 사업업종은 법인의 업종과 일치해야 한다.”로 규정한다.”

따라서 지점은 법인의 종속 영업소이고 법인격이 없으며 법적거래 관계에 독립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으로 우선적용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Why Deloitte?

Understanding that your unique concern requires unique solution, we offer meticulously carved and individually tailored solution to address your specific concern at any stage of your investment.

Our approach combines insight and innovation from multiple disciplines, industry knowledge and practical experience to help adding value to your business locally and globally from our undisputed market leader advantag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Tax Partner**

+84 24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Vo Hiep Van An**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Tax Partner**

+84 24 7105 0023

ngavu@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 legal and related services. Our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sation”)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312,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About Deloitte Asia Pacific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 Chi Minh City,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Tokyo and Yangon.

About Deloitte Vietnam

Deloitte Vietnam, a pioneer in the Advisory and Audit industry with nearly 30 years of experience in the Vietnam market, is part of the Deloitte Global network, one of the Four largest professional services organisations in the world. Our clients are served by over 1,000 staff located in our Hanoi and Ho Chi Minh City offices with access to the full strength of our Deloitte Asia Pacific member firms. Through our extensive network, Deloitte Vietnam delivers value-added services in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 Corporate Governance, Tax & Legal, Consulting, Audit & Assurance and Professional Training Services to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